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12인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재우·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원섭·김정도·김춘남·박교상
신용하·양진오·이지연·정지원
추은희 의원(13인)

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특히 위기가구 구성원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의 부재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안 제3조)
- 나. 위기가구 발견 신고(안 제4조)
- 다. 포상금 및 지급시기(안 제5조~제6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법」 제777조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 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 6) 「지방공무원법」 제2조
- 7) 「교육공무원법」 제2조

나. 부서검토: 복지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
2.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3.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실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이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단, 발굴 활성화를 위해 13호, 21호, 22호 및 24호는 제외한다.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6.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7.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

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징수나 연금·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

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1. (생략)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 ④ (생략)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 ⑪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복지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기가구 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제한, 환수)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상금 조정 : 1건당 10만원 ⇒ 5만원 (한도 30만원 ⇒ 20만원) → 대부분의 시군구의 포상금액 5만원인 것을 감안하고, 발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액 하향 조정 필요◦ 지급방법 : 현금 ⇒ 지역 화폐(구미사랑상품권)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포상금 지급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지급 → 발굴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있는 통·리장에게 지급 할 경우 무분별한 신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저하 우려 (발굴경로 등을 파악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지급 결정)◦ 지급시기 :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다음 분기 이내 → 통·리장에게 지급시 심의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한 조정 필요 (매월 심의위원회 개최 해야하는 번거로움 감소)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등 위기가구 발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요예산 : 미첨부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문 제 점 : 상기 검토결과 내용에 포함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및 사업 홍보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최유진(☎054-480-5143)